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14
----------	------

2016. 02. 26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심사경과

의안 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1014	2016.02.11	2016.02.15	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6.02.26)	원안동의

3. 제안이유 및 요지

□ 제안이유

- 친환경적인 추모문화 시설과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,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일부 부지를 실내·외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
□ 입안내용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공원	묘지 공원	서초구 원지동 49번지 일원	58,336	감)30,479	27,857	2001. 9.25. (서고 312호)	○ 일부 중복결정 - 중로2류(2,113㎡)
신설	공원	체육 공원	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원	-	증)20,923	20,923		○ 일부 중복결정 - 소로2류(3,842㎡)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/지구 : 자연녹지지역
- 도시계획시설 : 공원(묘지공원)

5. 주민 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6. 1. 14. ~ 1. 28. (15일간)
- 열람공고 : 일간신문(한겨레, 아시아경제), 서울시홈페이지
- 의견사항 : 의견 없음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구분	협의 의견	조치 계획	비고
공원 조성	○ 사업 시행 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절차이행	○ 사업 시행 전 해당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물관리 정책	○ 빗물분당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 대상사업인 경우 관련계획 수립 후 사업 인·허가 전 사전협의	○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빗물관리시설 계획 후 사업 인·허가 전 사전협의 예정	반영
	○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투수포장, 빗물이용시설 등 시설 설치	○ 설계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하겠음	반영
	○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	○ 설계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 되도록 계획하겠음	반영
자연 생태	○ 산지관련협의를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함	○ 서초구와 협의하겠음	반영
	○ 실시계획 승인시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함	○ 서초구와 협의하겠음	반영
도시계획 상임 기획단	○ 관계법령에 따른 묘지공원 설치 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필요성 검토 요망	○ 묘지공원 면적이 설치기준(10만㎡이상) 이하이나 주변에 국립의료원 이전부지와 기능이 유사한 화장장이 인접하여 예외 조항 적용 가능 ○ 향후 화장시설 확장에 따른 묘지공원 내 장례시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어려움	미 반영
	○ 체육공원 대상지 북측 도시계획도로(소로 2류) 등을 제척한 바,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재검토 요망	○ 중복된 도시계획도로(소로2류)를 포함한 구역계로 조정하였음	반영
	○ 건축계획 수립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설계요소 적극 도입	○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도입하겠음	반영

	○ 폐기물처리시설 연접 경계부에 완충공간 확보	○ 헨스와 덩굴성 식물 등을 통해 경관 및 악취 등을 완화하겠음	반영
시설 계획과	○ 주변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	○ 충분한 녹지 확보 및 친환경설계 등을 통해 악영향 최소화하겠음	반영
	○ 일부분이 비오톱1등급 토지로 설정되어 있어 보전 필요	○ 해당 지역은 북측 녹지와 잔디마당으로 주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보전하겠음	반영
서초구 도시 계획과	○ 원지동 611-2(도) 체육공원 추가편입요망	○ 편입되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	○ 건립대지와 현릉로우회도로 사이에 갇힌 토지(5곳)의 추가 편입	○ 유희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	○ 현릉로우회도로 지상부 유티구간 및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제외	○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제외되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한국 도로 공사 수도권 본부	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	○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음	반영
	○ 고속도로부지내 도시계획시설 인근 토지는 관련법률에 의거 보상하거나 미편입시 고속도로 부지 외로 시설변경(서울만남의 광장 확장 또는 일반매각 예정)	○ 체육공원인근 부지 중 소로2류에 포함된 부지는 체육공원과 도로로 중복결정 후 사업시행 시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음	반영

7. 환경성 검토

- 식생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약 7% 내외로 공원 조성 시 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특정야생생물(법적보호종)은 발견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8. 기 타

○ 재원조달계획

- 연차별 투자계획 : 시비(19,662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	비 고
공 사	17,472		6,989	10,483	
보 상	966		966		
용 역	1,134	60	860	214	
기 타	90		90		측량, 지반조사 등
계	19,662	60	8,905	10,697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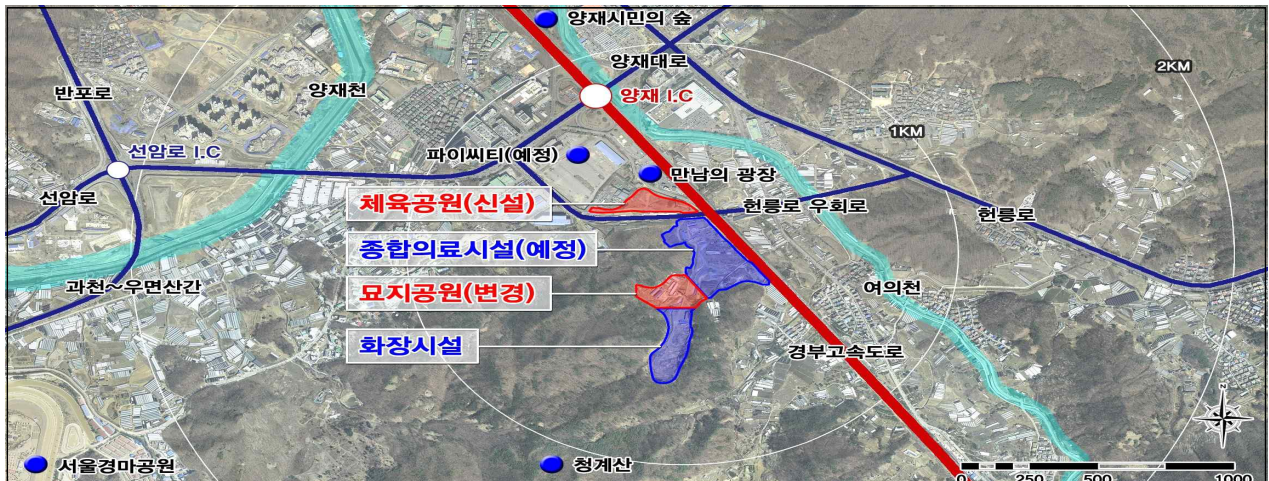
9. 검토보고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의견청취안은 서초구 원지동 4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을 축소하여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(〔별첨 1〕 체육공원 시설 및 건축 개요 참조)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〉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공원	묘지공원	서초구 원지동 49번지 일원	58,336	감)30,479	27,857	2001. 9.25. (서고 312호)	◦ 일부 중복결정 - 종로2류(2,113㎡)
신설	공원	체육공원	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원	-	증)20,923	20,923		◦ 일부 중복결정 - 소로2류(3,842㎡)

〈위치도〉



〈서울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현황〉

도시계획시설	계	화장장	묘지공원	종합의료시설	도로
결정부지 면적 (㎡)	164,364	36,453	58,336	69,575	2,113 (공원과 중복 결정)

- 당초 이 묘지공원(130,320㎡)은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인접지에 있는 화장시설(39,700㎡), 도로와 함께 2001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, 이후 화장시설 및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 및 서초구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

의료원을 유치하게 되어, 2009년 4월 묘지공원 일부(69,575㎡)가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으며, 그에 따라 묘지공원이 양분되었음. 아울러 잔여 묘지공원 일부도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금번 도시계획 결정 요청안과 같이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- 한편, 관련부서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현재의 묘지공원¹⁾이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설치규모에 대한 예외규정²⁾ 적용이 가능함.
- 따라서, 이 의견청취안은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2009년도 이후 추진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묘지공원 일대의 생활공원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, 화장시설의 추가 확충 부지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, 화장시설의 수요는 2030년까지 충족 가능한 것으로 파악³⁾되며, 설령 추가공급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부지에 시설을 확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사료됨.

1) 묘지공원이란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라목)

2)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 이하로 할 수 있음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)

3) 서울시 화장시설은 2개소이며, 이 중 원지동 서울추모공원(171,335㎡)의 시설은 화장로 11기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, 일일최대 처리능력은 65구이며, 2015년 기준 가동률은 약 76%임. 또한, 화장처리 능력 추계 결과 현재보다 매년 1일 최대 3구(4구)씩 증가하더라도, 2030년(2025년)까지 화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(어르신복지과 자료)

- 종합하면, 금번 의견청취안은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묘지공원의 위치 및 현황, 토지이용의 효율성, 화장시설의 수요,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, 체육공원의 이용수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11. 토론요지 : 생략

12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13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0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2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공원	묘지 공원	서초구 원지동 49번지 일원	58,336	감)30,479	27,857	2001. 9.25. (서고 312호)	◦ 일부 중복결정 - 중로2류(2,113㎡)
신설	공원	체육 공원	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원	-	증)20,923	20,923		◦ 일부 중복결정 - 소로2류(3,842㎡)

3. 입안사유

- 친환경적인 추모문화 시설과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,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일부 부지를 실내·외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/지구 : 자연녹지지역
- 도시계획시설 : 공원(묘지공원)

5. 주민 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6. 1. 14. ~ 1. 28. (15일간)
- 열람공고 : 일간신문(한겨레, 아시아경제), 서울시홈페이지
- 의견사항 : 의견 없음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구분	협의 의견	조치 계획	비고
공원 조성과	○ 사업 시행 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절차이행	○ 사업 시행 전 해당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물관리 정책과	○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 대상사업인 경우 관련계획 수립 후 사업 인·허가 전 사전협의	○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빗물관리시설 계획 후 사업 인·허가 전 사전협의 예정	반영
	○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투수포장, 빗물이용시설 등 시설 설치	○ 설계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하겠음	반영
	○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	○ 설계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 되도록 계획하겠음	반영
자연 생태과	○ 산지관련협의를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함	○ 서초구와 협의하겠음	반영
	○ 실시계획 승인시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함	○ 서초구와 협의하겠음	반영
도시계획 상임 기획단	○ 관계법령에 따른 묘지공원 설치 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필요성 검토 요망	○ 묘지공원 면적이 설치기준(10만㎡이상) 이하이나 주변에 국립의료원 이전부지와 기능이 유사한 화장장이 인접하여 예외 조항 적용 가능 ○ 향후 화장시설 확장에 따른 묘지공원 내 장례시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타 도시 계획시설로 변경 어려움	미 반영
	○ 체육공원 대상지 북측 도시계획도로(소로 2류) 등을 제척한 바,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재검토 요망	○ 중복된 도시계획도로(소로2류)를 포함한 구역계로 조정하였음	반영
	○ 건축계획 수립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설계요소 적극 도입	○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도입하겠음	반영
	○ 폐기물처리시설 연접 경계부에 완충공간 확보	○ 헨스와 덩굴성 식물 등을 통해 경관 및 악취 등을 완화하겠음	반영

시설 계획과	○ 주변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	○ 충분한 녹지 확보 및 친환경설계 등을 통해 악영향 최소화하겠음	반영
	○ 일부분이 비오톱1등급 토지로 설정되어 있어 보전 필요	○ 해당 지역은 북측 녹지와 잔디마당으로 주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보전하겠음	반영
서초구 도시 계획과	○ 원지동 611-2(도) 체육공원 추가편입요망	○ 편입되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	○ 건립대지와 현릉로우회도로 사이에 갇힌 토지(5곳)의 추가 편입	○ 유휴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	○ 현릉로우회도로 지상부 유턴구간 및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제외	○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제외되도록 체육공원 경계 조정하였음	반영
한국 도로 공사 수도권 본부	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	○ 편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음	반영
	○ 고속도로부지내 도시계획시설 인근 토지는 관련법률에 의거 보상하거나 미편입시 고속도로 부지 외로 시설변경(서울만남의 광장 확장 또는 일반매각 예정)	○ 체육공원인근 부지 중 소로2류에 포함된 부지는 체육공원과 도로로 중복결정 후 사업시행 시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음	반영

7. 환경성 검토

- 식생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약 7% 내외로 공원 조성 시 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특정야생생물(법적보호종)은 발견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8. 기 타

○ 재원조달계획

- 연차별 투자계획 : 시비(19,662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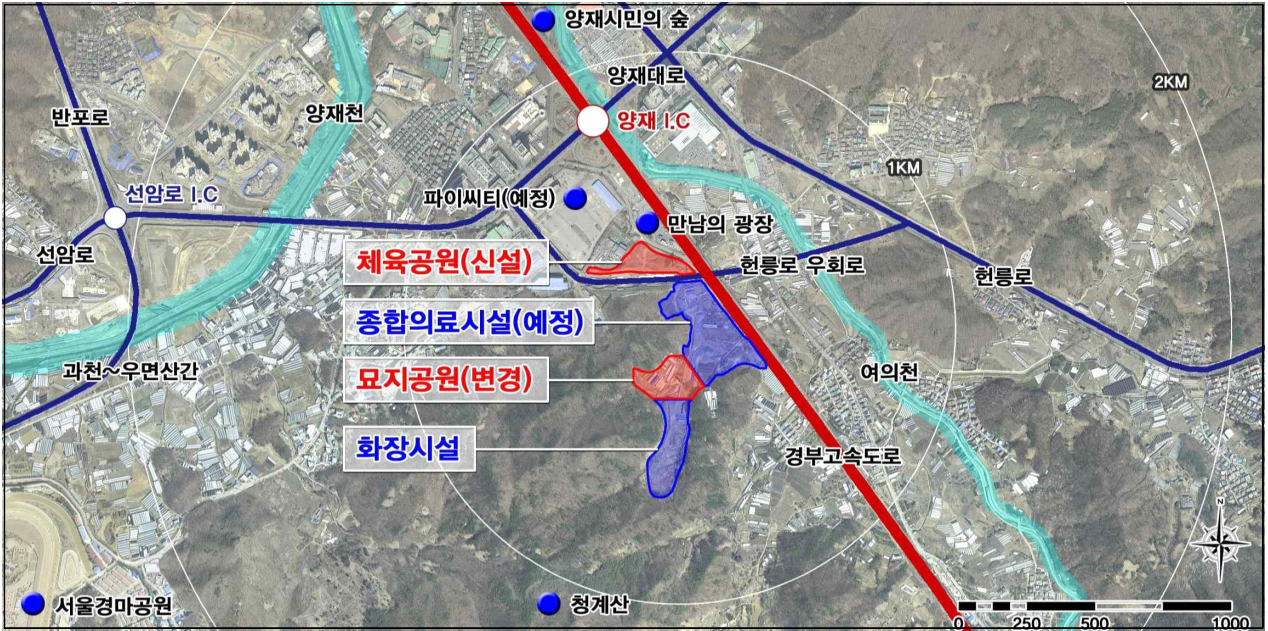
구 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	비 고
공 사	17,472		6,989	10,483	
보 상	966		966		
용 역	1,134	60	860	214	
기 타	90		90		측량, 지반조사 등
계	19,662	60	8,905	10,697	

○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

- 2001. 09. 25 : 도시계획시설(화장장, 묘지공원, 도로) 결정(서고312호)
- 2002. 04. 08 : 개발제한구역 해제(건설교통부고시제2002-61호)
- 2002. 04. 27 : 도시계획시설(화장장, 묘지공원, 도로) 실시계획 고시(서고146호)
- 2009. 04. 23 :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공원, 종합의료시설)]
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서고169호)
- 2011. 01. 21 : 체육공원 조성 사업추진계획 수립(서울특별시지방침제21호)
- 2011. 08. 18 : 묘지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(조건부 승인)
- 2011. 11. 10 : 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서울시보제3077호)
- 2012. 08. 21 : 도시공원위원회 자문(공원조성과)
- 2013. 09. 12 : 도시관리계획변경(체육공원)관련 협의회신(공원조성과)
※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완료
- 2014. 11. 18 : 투자사업 심사(196.6억)
※ 지연사유 : '13. 10월 이후 투자심사 지연 및 용역업체 파산('14.7)
- 2015. 06. 04 ~ 06. 19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 열람공고
(한겨레, 매일경제, 시خم페이지)
- 2016. 01. 04 : 도시관리계획도서 재제출(시설계획과)
- 2016. 01. 14 ~ 01. 28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 재열람공고
(한겨레, 아시아경제, 시خم페이지)

붙 임 : 관련도면 각 1부.

□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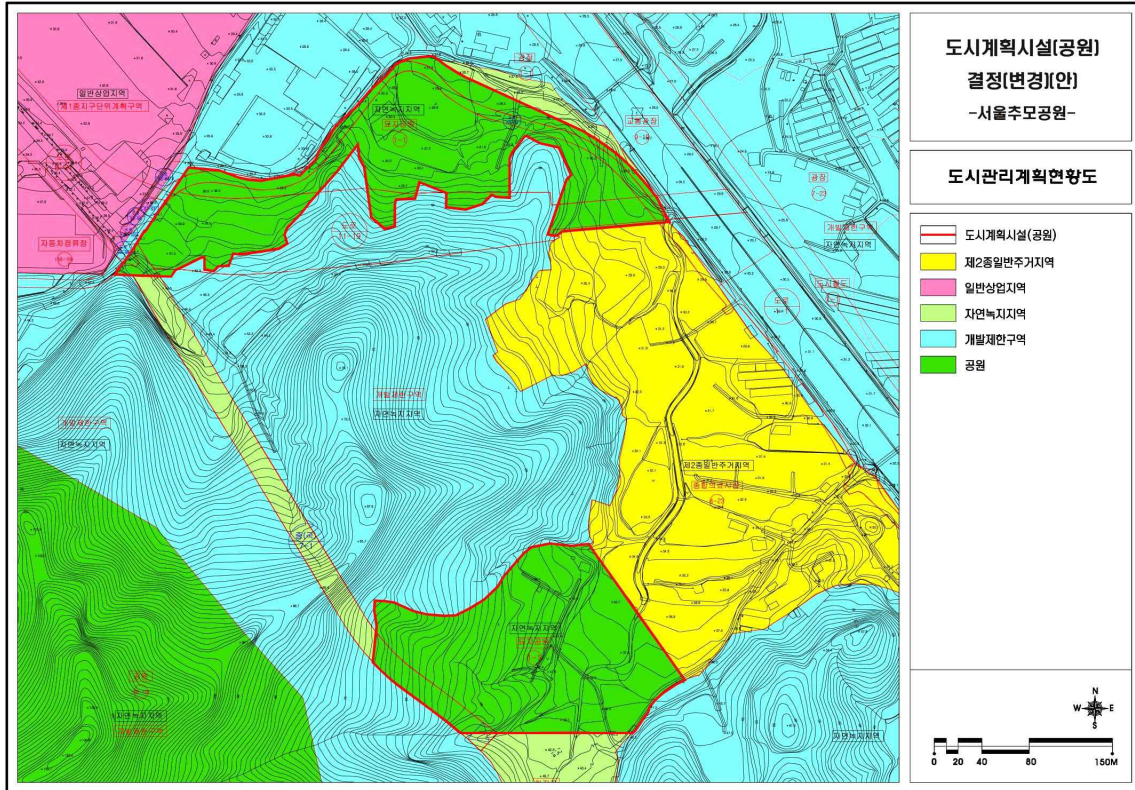


□ 현황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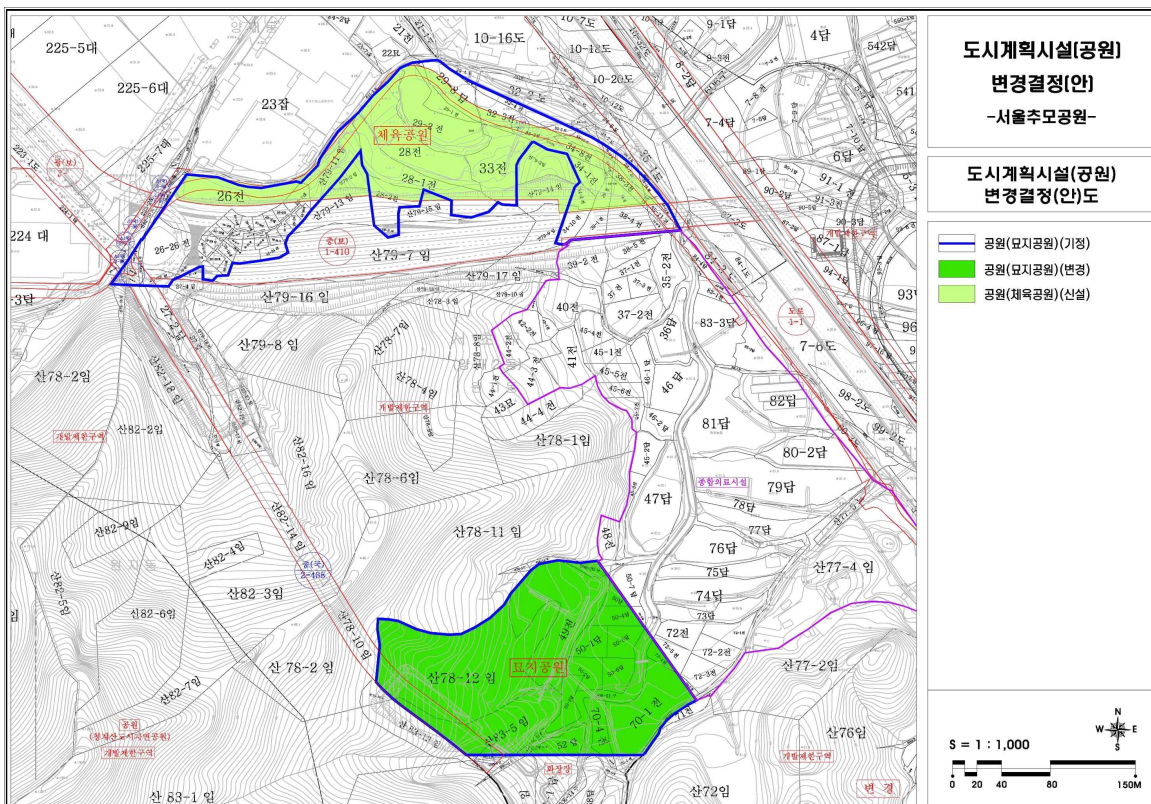
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도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도 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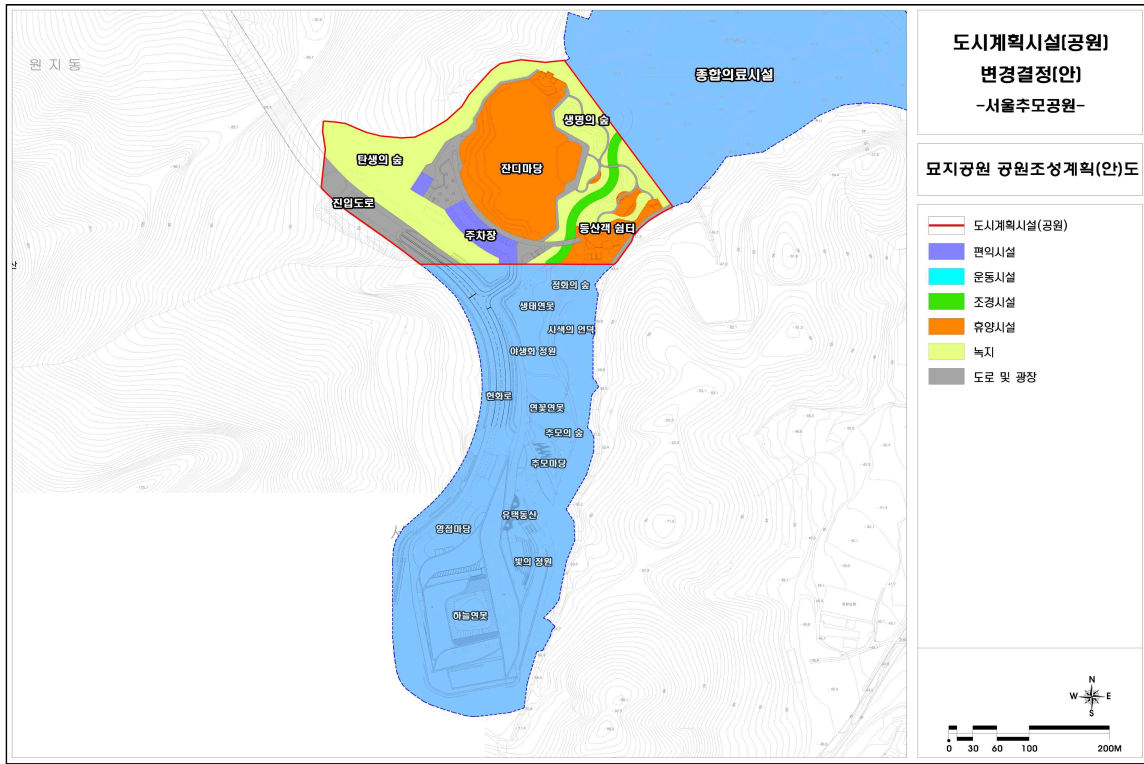
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도 (변경)



□ 공원조성계획도

○ 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도



○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도

